

환자는 청구될 수 있는 의료 비용을 사전에
설명해주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비용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의료 제공자는 의료보험이 없거나 의료보험을 사용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환자에게 의료용품과 치료 서비스에 대한 산정 비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 환자는 비응급 의료용품이나 치료 서비스 총비용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비용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검사, 처방약, 장비 및 병원 수수료 등과 같은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 » 담당 의료 제공자는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나 의료 물품을 제공하기 최소한 1일 전에 서면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비용산정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 의료 제공자나 본인이 선택한 다른 의료 제공자에게 특정한 의료 물품이나 치료 서비스 제공 일정을 예약하기 전에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비용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만약 청구서의 비용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비용산정 금액보다 최소한 \$400를 초과한다면, 해당 청구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비용산정 공지서 사본이나 사진을 보관해둡니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비용산정을 받을 권리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www.cms.gov/nosurprises를 방문하시거나
(651) 968-5050으로 연락해주시십시오.

